|  |
| --- |
|  |
| 2024년 제1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규직원 채용공고 |
|  |

|  |  |  |
| --- | --- | --- |
|  |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  |
|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산업 진흥을 담당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직무현장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15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  |  |  |
| --- | --- | --- |
| 1 |  | 모집개요 |

**□ 채용분야**

|  |  |  |
| --- | --- | --- |
| **구분** | **채용분야** | **인원** |
| 일반직 | 선임급 | 신입 | 로봇실증연구 | **1** |
| 표준·인증 | **1** |
| 일반행정(정책개발) | **1** |
| 무기계약직 | 선임급 | 신입 | 환경·시설운영 | **1** |
| 사업관리 | **1** |
| 계약직(사업) | 선임급 | 무관 | 사업관리(로봇활용 제조혁신) | **2** |
| 실증환경 설계·운용 | **2** |
| 계약직(육아휴직대체) | 선임급 | 신입 | 사업관리(시험평가 장비 운영) | **1** |
| 일반행정 | **1** |
| 체험형인턴 | 인턴 | - | 시험평가지원 | **1** |
| **합계** | **12** |

**□ 세부내용**

|  |  |
| --- | --- |
| **구분** | **주요내용** |
| 일반직 |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최종합격자 **‘24.7.1. 임용 예정** |
| 무기계약직 |
| 계약직(사업)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채용분야의 경우 **사업 종료시점 내에 평가·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  |  |
| --- | --- |
| **채용분야** | **사업종료시점** |
| 사업관리(로봇활용 제조혁신) | ∼‘24.12.31. |
| 실증환경 설계·운용 | ∼‘28.12.31. |

 |
| 계약직(육아휴직대체) | ⦁육아휴직자 휴직 연장시 계약연장 가능

|  |  |
| --- | --- |
| **채용분야** | **계약만료시점** |
| 사업관리(시험평가 장비 운영) | ∼‘24.9.4. |
| 일반행정 | ∼‘25.8.11 |

 |
| 체험형인턴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6개월 |

**□ 응시자격**

|  |  |
| --- | --- |
| **구분** | **주요 내용** |
| **공통** | **학력** | ⦁무관 |
| **전공** | ⦁무관 |
| **연령** | ⦁무관(단, 진흥원의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미 해당자[붙임1 참조] |
| **기타** | ⦁경력‧연령‧자격 등 시점 : 공고 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무 가능한 자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 기준)에 따른 장애인 |

**□ 주요사항**

|  |
| --- |
|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신입’으로 채용할 경우 군경력(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별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무관’**의 경우 응시자격으로 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분야 **관련 경력**이 있다면 진흥원 규정에 의거 경력을 산정함\*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의 경력을 인정(중복경력 제외)예) 석사학위(최대 2년) + 실무(연구)경력 1년 = 경력 3년으로 인정\* 무기계약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일반직과 동일하며 입사 후 일반직 전환 가능\*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외부 경력과 무관하게 입사 후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뒤 승진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 동점자 처리 기준**

ㅇ 서류심사·필기평가, 면접시험(1,2차 면접진행의 경우 1차 면접시험만 적용)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면접전형(최종면접 전형에 한함) 합격자는 면접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함.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전단계 전형 고득점자

4. 전전단계 전형 고득점자

|  |  |  |
| --- | --- | --- |
| 2 |  | 채용절차 및 일정 |

**□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

|  |  |  |  |
| --- | --- | --- | --- |
| **전형절차** | **전형대상** | **전형방법** | **합격기준** |
| 서류심사 | 모든 지원자 | - 적격심사 | 적합 |
| 필기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100점)·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채용예정 인원의7배수 내외) |
| - 인성검사 | 적합 |
| 면접시험 | 1차 | 필기평가 합격자 | - 직무 역량면접(PT 면접) | 평균 8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3배수) |
| 2차 | - 심층 역량면접 | 평균 8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1배수) |
| 신체검사 | 면접전형 합격자 | - 신체검사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  |
| **비위면직자** | - 국민권익위원회 의뢰 | 적합 |

**□ 비정규직(계약직/체험형인턴)**

|  |  |  |  |
| --- | --- | --- | --- |
| **전형절차** | **전형대상** | **전형방법** | **합격기준** |
| 서류심사 | 모든 지원자 | - 적격심사- 정량평가(20점) [붙임2 참조]- 우대사항 |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채용예정 인원의5배수 내외) |
| - 경험/경력 기술서(35점)- 자기소개서 평가(45점) [붙임3 참조] |
| 필기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 - 인성검사 | 적합 |
| 면접시험 | 필기평가적격자 | - 심층 역량면접 | 평균 8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1배수) |
| 신체검사 | 면접시험 합격자 | - 신체검사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  |
| 비위면직자 | - 국민권익위원회 의뢰 | 적합 |

**□ 채용일정**

ㅇ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

|  |  |  |  |  |
| --- | --- | --- | --- | --- |
| **채용 절차** |  | **주요 내용** |  | **세부일정(예정)** |
|  |  |  |  |  |
| 채용공고 및 접수 |  | ▪입사지원 마감일 13:00까지 접수 |  | 03.15(금)∼03.30(토) |
| ▼ |  |  |  |  |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및 불성실 기재 등 적합 여부 판단 |  | 04.02(화)∼04.04(목) |
| ▪합격자 발표 및 필기전형 일정 안내 |  | 04.09(화) |
| ▼ |  |  |  |  |
| 필기전형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 04.20(토) |
|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일정 안내 |  | 04.24(수) |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 04.27(토)∼04.28(일) |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안내 |  | 05.02(목) |
| ▪제출서류 안내 및 지원자 증빙서류 검증 |  | 05.02(화)∼05.08(수) |
| ▼ |  |  |  |  |
| 면접전형 | 1차 |  | ▪직무역량 PT 면접 |  | 05.16(목)∼05.17(금) |
| ▪합격자 발표 및 2차 전형 일정 안내 |  | 5.22(수) |
| 2차 |  | ▪심층 역량면접 |  | 5.30목)∼5.31(금) |
| ▼ |  |  |  |  |
| 최종합격자 발표 |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 06.12(수) |

ㅇ 비정규직(계약직/체험형인턴)

|  |  |  |  |  |
| --- | --- | --- | --- | --- |
| **채용 절차** |  | **주요 내용** |  | **세부일정(예정)** |
|  |  |  |  |  |
| 채용공고 및 접수 |  | ▪입사지원 마감일 13:00까지 접수 |  | 03.15(금)∼03.30(토) |
| ▼ |  |  |  |  |
| 서류전형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  | 04.02(화)∼04.04(목) |
| ▪합격자 발표 및 필기전형 일정 안내 |  | 04.09(화) |
| ▼ |  |  |  |  |
| 필기전형 |  |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 04.10(수)∼04.11(목) |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안내 |  | 04.16(화) |
| ▪제출서류 안내 및 지원자 증빙서류 검증 |  | 04.16(화)∼04.19(금) |
| ▼ |  |  |  |  |
| 면접전형 |  | ▪심층 역량면접 |  | 04.25(목) |
| ▼ |  |  |  |  |
| 최종합격자 발표 |  |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 05.09(목) |

**\*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 | --- | --- |
| 3 |  |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

**□ 가점 적용 기준**

ㅇ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

|  |  |  |  |
| --- | --- | --- | --- |
| **유형** | **적용 단계** | **부여 가점****(만점 기준)** | **가점적용****채용 유형** |
| **필기** | **면접** |
| 등록장애인 | ○ | ○ | 5% | 모든 채용 |
| 취업 지원대상자 | ○ | ○ | 5% 또는 10% | 모든 채용 |
| 사회형평적 | 저소득층 | ○ |  | 3% | 모든 채용 |
| 다문화가족 | ○ |  | 3% | 모든 채용 |
| 북한이탈주민 | ○ |  | 3% | 모든 채용 |

ㅇ 비정규직(계약직/체험형인턴)

|  |  |  |  |
| --- | --- | --- | --- |
| **유형** | **적용 단계** | **부여 가점****(만점 기준)** | **가점적용****채용 유형** |
| **서류** | **필기** | **면접** |
| 등록 장애인 | ○ | ○ | ○ | 5% | 모든 채용 |
| 취업 지원대상자 | ○ | ○ | ○ | 5% 또는 10% | 모든 채용 |
| 사회형평적 | 저소득층 | ○ | ○ |  | 3% | 모든 채용 |
| 다문화가족 | ○ | ○ |  | 3% | 모든 채용 |
| 북한이탈주민 | ○ | ○ |  | 3% | 모든 채용 |
| 경력단절여성 | ○ |  |  | 3% | 모든 채용 |
| 우리원 인턴/비정규직 근로자  | ○ |  |  | 3% | 24개월 이상 | 모든 채용 |
| 2%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모든 채용 |
| 1% |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모든 채용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  |  | 2% | 모든 채용 |

※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단, 등록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복 시 10% 초과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유형의 경우 최소 모집 단위의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적용

**□ 우대사항 증빙서류**

|  |  |  |
| --- | --- | --- |
| **유형** | **유형 정의** | **증빙서류** |
| 취업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국가유공자(가족)확인서 인정 불가  |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장애인 증빙서류 |
| 사회형평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저소득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표시),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채용공고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 | 경력단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우리원 인턴/비정규직 근로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체험형 인턴 혹은 계약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자※ 파견근로자 및 현장실습생 제외(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경력에 한함)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력증명서 혹은 체험형인턴 수료증 |
| 비수도권 지역인재[붙임4 참조] | 서울ㆍ인천ㆍ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증명서 |

**□ 전형단계별·시험별 부적격(합격기준 미달) 해당 시 적용 제외**

**□ 제출서류 목록**

|  |  |
| --- | --- |
| **항목** | **대상자** |
| ⦁최종학력 증명서(석·박사의 경우 이전 학위 포함)①석사: 학사·석사 졸업증명서 ②박사 : 학사·석사·박사 졸업증명서 - 대학교 졸업(예정)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퇴·휴학자의 경우 제출⦁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는 병역사항 모두 기재) | **필수 제출** |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증명서⦁최종학교 성적 증명서⦁우대사항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공인 영어시험 증명서⦁교육사항 증빙서류-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직업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이수시간 표기 필수)⦁경력 및 재직 증명서(근무기간 확인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해당자에****한함** |

|  |
| --- |
| 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의 경우 제출 전 공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통한 **근무 기간 반드시 확인**다.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기준으로 **면접 전 온라인 제출 후 면접전형 당일 최종 제출**라.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검토 결과 **허위 서류, 결격사유, 자격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탈락 처리** |

|  |  |  |
| --- | --- | --- |
| 4 |  | 유의사항 |

**□ 예비합격자 운영 방안**

ㅇ 각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단계별 과락자, 인성검사 부적격자, 전형별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제외

ㅇ 입사포기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입사일까지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충원. 또한, 입사 후 3개월 이내 입사포기자 발생 시 추가 충원 가능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
| --- |
| ｢채용비리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예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2.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3.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

|  |  |  |
| --- | --- | --- |
| 5 |  | 기타사항 및 안내사항 |

ㅇ 부정한 청탁(본인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진흥원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

ㅇ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블라인드 채용 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학교명, 성별, 개인 인적사항 등)이 표시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체검사 등으로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ㅇ 입사지원서 미기재 경력사항은 추후 경력증명서 제출하더라도 경력 불인정

ㅇ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내부 규정에 의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수습 기간 평가 후 정식 임용함

ㅇ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

ㅇ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ㅇ 전형별 불합격자는 채용사이트에서 이의신청 가능(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급여 및 복리후생은 진흥원 내규에 의함

ㅇ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붙임5 참조]

ㅇ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진흥원 내규에 의함

|  |  |  |
| --- | --- | --- |
| 붙임1 |  | 결격사유 |

|  |
| --- |
|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9.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1. 전 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2. 인사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  |  |
| --- | --- | --- |
| 붙임2 |  | 비정규직 서류심사 정량평가 점수산출 방법 |

**□** 대학교 이상 졸업자

- 최종 출신학교 또는 졸업예정인 학교의 이수성적 평균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 **(대학원 제외)**

|  |  |  |
| --- | --- | --- |
| **배점** | **대학교 졸업자(전문학사 포함) 기준** | **고등학교****졸업자 기준****(백분율)** |
| **4.0 만점** | **4.3 만점** | **4.5만점** | **100점 환산****(100분위)** |
| **S****(20점)** | 3.70 ∼ 4.00 | 4.00 ∼ 4.30 | 4.20 ∼ 4.50 | 96 ∼ 100 | 1 ∼ 12% 미만 |
| **A****(18점)** | 3.30 ∼ 3.69 | 3.60 ∼ 3.99 | 3.80 ∼ 4.19 | 92 ∼ 95  | 12 ∼ 23% 미만 |
| **B****(16점)** | 2.90 ∼ 3.29 | 3.20 ∼ 3.59 | 3.40 ∼ 3.79 | 88 ∼ 91 | 23 ∼ 34% 미만 |
| **C****(14점)** | 2.50 ∼ 2.89 | 2.80 ∼ 3.19 | 3.00 ∼ 3.39 | 84 ∼ 87 | 34 ∼ 45% 미만 |
| **D****(12점)** | ∼ 2.49 | ∼ 2.79 | ∼ 2.99 | ∼ 83 | 45% ∼ |

\* 100점 환산 점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 고졸자

- 3학년 전 과목 중 학기별로 7개 과목씩 선택하여 해당 과목의 등급에 단위수를 곱하고 그 합을 총 단위수로 나누어 산출된 등급

\* 등급으로 평가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고졸자 등급산출 예시]**

|  |  |  |
| --- | --- | --- |
| **3학년1학기** | **3학년 2학기** | **①등급 × ②단위수1)** |
| **과목명** | **①등급** | **②단위수** | **과목명** | **①등급** | **②단위수** |
| 문학I | 1 | 4 | 문학Ⅱ | 1 | 4 | 1×4 + 1×4 = 8 |
| 확률통계 | 2 | 3 | 이산수학 | 1 | 2 | 2×3 + 1×2 = 8 |
| 영어회화 | 1 | 3 | 영어회화 | 4 | 3 | 1×3 + 4×3 = 15 |
| 한국지리 | 3 | 4 | 한국지리 | 1 | 4 | 3×4 + 1×4 = 16 |
| 화학Ⅰ | 4 | 4 | 화학Ⅱ | 1 | 4 | 4×4 + 1×4 = 20 |
| 한국근현대사 | 3 | 4 | 윤리와사상 | 2 | 2 | 3×4 + 2×2 = 16 |
| 문법 | 2 | 2 | 문법 | 1 | 2 | 2×2 + 1×2 = 6 |

\* 1)의 총합(각 학기 ①과 ②의 곱한 총합)을 총 단위수(각 학기 ②의 총합)로 나누어 산출된 등급을 평가 기준으로 함 (산출된 내신등급을 바탕으로 백분위 산출)

\* 예시의 경우 : 89(각 학기 ①과 ②의 곱한 총합) ÷ 45(각 학기 ②의 총합) = 1.98등급

→ 1.98 / 9 = 22%

\* 단, A～E등급과 1～9등급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1～9등급 기준으로 산출

- (검정고시) 필수과목 6개와 선택 1개(총 7개 과목)의 각 점수에 해당하는 환산 등급 평균치

**[검정고시 성적의 등급 환산 기준]**

|  |  |
| --- | --- |
| **과목 점수** | **산출등급** |
| 95.01 이상 | 1등급 |
| 90.01 | ～ | 95.00 | 2등급 |
| 85.01 | ～ | 90.00 | 3등급 |
| 80.01 | ～ | 85.00 | 4등급 |
| 75.01 | ～ | 80.00 | 5등급 |
| 70.01 | ～ | 75.00 | 6등급 |
| 65.01 | ～ | 70.00 | 7등급 |
| 60.01 | ～ | 65.00 | 8등급 |
| 60.00 이하 | 9등급 |

**[검정고시 등급산출 예시]**

|  |  |  |
| --- | --- | --- |
| **과 목 명** | **점 수** | **산 출 등 급** |
| (필수)국 어 | 96 | 1 |
| (필수)영 어 | 92 | 2 |
| (필수)수 학 | 90 | 3 |
| (필수)과 학 | 100 | 1 |
| (필수)사 회 | 96 | 1 |
| (필수)한 국 사 | 88 | 3 |
| (선택)음 악 | 100 | 1 |
| 평 균 | 94.57 | 1.71 |

\* 각 과목별 점수의 환산 기준에 따른 산출 등급 평균치를 평가 기준으로 함

\* 예시의 경우 : **1.71등급**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성적 미입력자의 경우 정량평가 점수 0점 처리**

|  |  |  |
| --- | --- | --- |
| 붙임3 |  | 블라인드 서류 검토 기준 |

**□** **블라인드 채용 안내 사항**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준용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이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블라인드 처리 등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지원자는 아래 블라인드 기준을 잘 숙지하여 지원서를 작성, 블라인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동아리명 등 출신학교명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성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예시) : 의경 생활 중 활동을 통해~, 여성전문교육기관 수료를 통해~ 등

- 직무관련 경력 확인을 위해 **기업명, 공공기관명은 작성 가능**

- 단, 직무관련 경력이어도 **학교명**은 출신여부와 무관하게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서류 검토 항목 기준**

|  |  |
| --- | --- |
| **구분** | **기준** |
| 블라인드위반 | 성명 | ⦁입사지원서 성명란 외 지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탈락 처리** |
| 연령 | ⦁지원서 전 항목에 나이를 기재할 경우 **탈락 처리** |
| 출신지역 | ⦁출신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탈락 처리** |
| 가족관계 | ⦁가족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탈락 처리** |
| 성별 | ⦁성별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탈락 처리** |
| 출신학교 | ⦁출신학교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탈락 처리** |
| 불성실작성 | 기관명오기재 | ⦁기관명 오기재 및 타기관명 작성할 경우 **탈락 처리**\* 인정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KIRIA |
| 내용 미흡 | ⦁항목별 100자 미만, 지원서 항목과 다른 내용 작성 **탈락 처리** |

|  |  |  |
| --- | --- | --- |
| 붙임4 |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 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한 자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자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
| --- |
| 1.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가.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분교가 아닐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고등교육법 상의 ‘분교’ 등록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학교 측에 사전 확인하시거나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실 것- 분교운영 학교(예시) : 연세대 원주,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홍익대 세종 등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2.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가.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대학나.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라.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  |  |  |
| --- | --- | --- |
| 붙임5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
|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기재) |  |
|  |
| 반환요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